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4164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M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구합6865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 20.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2줄의 "본점 소재기: [redacted]시 G"을 "본점 소재지: [redacted]시 N"으로 고친다.

○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사업은 기존 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업 확장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사업은 위 F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존의 사업체인 O 주식회사의 사업 확장에도 해당하여,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제조업 개시는 기존 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제1심판결서 이유 5쪽 12행부터 11쪽 9행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30

지), 이 사건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가 처분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가 적법하므로, 피고가 그 후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거나 그러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